

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332호

「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·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3일

금융위원회

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·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,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

2 주요내용

가.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(별표 중 2. 기준금액)

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, 기준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0단계로 등급으로 분류되는 데 그 중 3~10등급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

나. 포상금 지급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(제37조제1항제4호)

자본시장법 시행령(제384조제1항)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공정시장과, 전화 : 02-2100-2682, 팩스: 02-2100-2678, 이메일 : entro21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/지식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